「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

개정사항

**강 남 노 무 법 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및 예외사유**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시행령 제3조의2**(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IRP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확화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함.  - 예외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는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를 말함.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 **시행령 제10조**(신설), **제10조의2**(신설), **시행령 제48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익률 제고하며, 합리적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체계 마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함.  -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 법 제16조 제1항의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근로자대표**, ②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 ③ **퇴직연금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이 **각각 1명이상은 포함되어야 함.**  ○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함.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사항  - 적립금운용계획서 적용범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운용성과 평가·적립금운용담당자의 의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48조 제2항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신설)  ○ **시행령 제16조**(신설) 및 **시행령 제16조의2**(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정적 운영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공단에 운영위원회를 둠.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위원은 ① 노동부 퇴직연금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당연직), ② 공단 상임이사, ③ 근로자 대표 위원(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사용자 대표 위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가 위원(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함.  - 직무 관련 비위사실 있는 경우 등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규정함.  ○ 운영위원회 소집 절차 및 요건, 회의록 보관 및 요약내용 공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의결 요건 등 관련 된 내용을 규정함. |

**중소퇴직기금 운용방법 및 운용·자산관리 위탁,**

**회계처리 및 결산**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신설), **제23조의6**(신설)  ○ **시행령 제16조의3**(신설), **제16조의9**(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그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소극적 가입 유도 및 중소기업 사업주 부담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법률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퇴직기금을 운용할 것을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예금, 보험, 공공부문 투자, 증권의 매매 및 대여(주식, 채권, 펀드),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선물, 옵션), 부동산 사업 투·융자 등을 말함.  - 국민연금에서 허용되는 운용방법과 동일함.  ○ 중소퇴직기금의 관리, 운용업무에 관한사항은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에, 계좌의 설정 및 관리,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료의 활용**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4**(신설)  ○ **시행령 제16조의5**(신설), **제16조의6**(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자료 활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신고자료 등 활용할 수 있음.  - 가입자의 급여내역, 수급권, 퇴직사실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함.  ○ 자료의 활용범위(시행령 제16조의5) 및 자료의 활용업무(시행령 제16조의6) 등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규정함. |

**중소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관련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신설), 제35조  ○ **시행령 제16조의7**(신설), **제16조의8**(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가입자 교육 및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
| **주요내용** | ○ 중소기업퇴직연금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승인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함.  ○ 표준계약서에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관리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②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  - 사용자 부담금 계정은 사용자가, 가입자 부담금 계정은 가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 법 제35조에 따라 이 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부담금 납입 및 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신설), **제23조의8**(신설), **제23조의10**(신설)  ○ **시행령 제16조의10**(신설), **제16조의11**(신설), **제16조의12**(신설), **제16조의13**(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가입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가입자 부담금계정 한도를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방지함 |
| **주요내용**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  ○ **퇴직하는 시점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일은 연장 가능함.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함.  - 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대해 우편발송,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 제공해야함.  ○ 가입자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연 1,800만원)으로 함 |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신설)  ○ **시행령 제16조의14**(신설), **제16조의15**(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함. |
| **주요내용** | ○ 가입자부담금계정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기존 IRP 규정을 준용하고,  - 기금제도 급여지급 등에 관한 사항도 기존 조문을 준용함. |

**사용자 · 가입자 부담금 등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신설), 제46조  ○ **시행령 16조의16**(신설), **제16조의17**(신설), **제16조의18**(신설), **제16조의19**(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사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함.  ○ 가입자 편의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함. |
| **주요내용** | ○ 30인 이하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기준,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지원기간은 고시로 위임함.  ○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 국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환수 대상 및 절차, 국가 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 규정함.  ○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신설)  ○ **시행령 제16조의20**(신설), **제16조의21**(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가입자 교육 및 공시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입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퇴직기금 **제도일반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을 교육  - 가입자부담금 계정 설정한 가입자에게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납입절차, 과세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 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주기와 기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6**(신설)  ○ **시행령 제16조의22**(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공단이 위법 혹은 부당 업무 처리 시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공단에 대한 시정명령 시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기한을 명시하여야 함.  ○ 시정기한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관한 사항**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 **시행령 제28조**, **제30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가입자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 보수교육을 강화함.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이행을 통해 모집인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함. |
| **주요내용** | ○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모집업무 수행은 가능하여 **이행하지 않는 문제 발생**  - 시행령 제30조에 **모집인의 준수사항**에 **보수교육 이행을 추가함.**  **-** 보수교육 미이행 시 모집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모집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가입자 교육 위탁대상 확대(전문기관)**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시행령 제31조**, **제32조의2**(신설), **제32조의3**(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가입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 받은 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년간 교육자료 보관해야 하며, 지정 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 등 규정함.  ○ **가입자 교육방법 시행령 격상 및 최초 교육방법 개선**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 규정하고 있던 **가입자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규정함.  - 다만, 코로나, 우편발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최초 교육** 시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기존 고용노동부령에서는 최초 교육 시 우편 발송, 대면 교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음. |

**퇴직급여 감소와 관련하여**

**근로자 고지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가입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함.  1.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미이행시 법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절차 및 방법**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  ○ **시행령 제36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공적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평가사항으로 운용역량 및 수익률 등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전담조직 등 제도운영 역량 등으로 규정함. |

**DB제도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 **시행령 제5조**, **제7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재정검증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사용자의 경우) **적립금 부족 해소** 위한 **조치 미실 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미이행: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1,000만원  ○ 기존 적립금 부족분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하도록 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는 계획서**로 변경함.  ○ 재정검증결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

**행정해석 운영 사항 법령 근거 명확화**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신설), **제11조의3**(신설)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기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행정해석으로 인정하던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화 하려는 것임.  ○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도록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부담금 산정 시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던 사유를 명시함.**  - ⓛ 수습기간, ②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 ③ 출산전후휴가,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업, ⑤ 육아휴직, ⑥ 쟁의행위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납입 시기를 명확화함.**  - 부담금 산정 기준 :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중 **큰 금액**  - 납입 시기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정한 날에** 납입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요건 명확화**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현장 혼선 방지 및 법령 명확화를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조문을 규정함 |
| **주요내용**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 요건을 명확화함.**  - 그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중도인출 요건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중도인출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했음.  \* IRP 특례 :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  -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전제로 하는 **IRP특례**에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적립금 운용방법(원리금보장상품) 확대**

|  |  |
| --- | --- |
| **규제 조문**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 **시행일** | 2022. 4. 14 시행 |
| **추진배경** | ○ 가입자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하여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유형을 확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 퇴직연금에서 운용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확대함.**  -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 투자성향** 하에서 **수익률 제고**와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권 보장**을 위함.  -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 증권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를 확대함. |